#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52%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시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

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시정 및 보완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다.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음

##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사전검사 대상을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 승인 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로 하여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안 제5조)

라.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편의시설 완화 등 관련사항 심의 근거 마련(안 제7조~ 8조)

마. 사전검사요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전검사반은 담당공무원 포함 3명 이내로 편성·운영(안 제10~11조)

바. 시설주의 사전검사 결과 적극 반영 책무 규정(제14조)

## 3. 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5. 관련법령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건축법

구미시 조례 제　　호

#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구미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전검사요원 구성)**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 계 법 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